

[일련번호 : 1]

경기도체육회

기관경고

[제 목] 정기종합감사 태도 불성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종목의 발전과 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우수한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본회 「감사규정」 제3조 제2항¹⁾는 본회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 관계단체 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협회의 경우 동 규정 제9조 제2항²⁾에 따라 ‘정기감사’의 대상으로, 규정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2 제1항³⁾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종목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 있다.

-
- 1) 본회 「감사규정」제3조(적용범위) ① 본회의 감사업무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② 감사대상기관은 본회 및 “본회 관계단체” 등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 2) 본회 「감사규정」제9조(감사의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본회는 매년 시군체육회와 도종목단체는 4년에서 5년 주기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11. “생략”
- 3)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47조의 2 ①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종목단체와 시·군종목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감사규정」 제15조⁴⁾에 따라 수감자료에 대한 각 자료에 대하여 감사대상 단체에 수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명시하여 감사인과 수감단체간의 협조 관계를 통한 효율적인 감사의 수행을 기하고 있다.

협회 또한 「규약」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장계 등)에 따라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회에 대한 본회의 감사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등)에 따라 수감자료인 기록물은 전자적 관리 및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본회 정기종합감사를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2023년도 총회 및 이사회 자료 등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수 없었고 사무국장 부재 등 사무국 운영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장은

정기종합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심도 깊은 반성과 향후 정기종합감사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시 협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과 개인의 일신상의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본회 전자문서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 조치결과를 본회 공정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회 「감사규정」제15조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사자료 및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단체 및 부서는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 2]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대의원총회 운영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년부터 20**년까지 총 *회의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당일 협회 대의원이 참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다. 그중 20**.**.** 비대면으로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5개의 심의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의 심의안건, 20**.**.** 개최된 '20** 정기대의원총회'의 경우 20**년 사업결과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7개의 심의안건을 의결하였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제7조 제6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을 협회 대의원으로 하게 하여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이는 동조 제7항에서 명문화하여 임원과 대의원(대의원의 대리인 포함)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규약」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대의원총회 구성 및 소집시 관련 「규약」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대의원의 임원 겸직 제한

협회는 20**년 정기대의원총회시 **시 대의원(장**)을 행정감사로 선임하였다. 대의원이 협회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규약」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인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고, 해당 단체의 부회장중 1인을 추천받아 협회 대의원으로 하게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금번 정기종합감사간 확인결과 해당인은 협회 감사 직무 수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대의원으로써 총회에 참석하고 있고, 해당 총회의 성원 및 의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 부적정

협회는 2021년 ~ 2023년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규약」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해야 하나, 3회⁵⁾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즉, 협회는 「규약」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대의원과 임원의 중복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총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향후 대의원총회 개최시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소집과 관련된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의원과 임원이 중복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임원 선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일련번호 : 3]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규약 개정절차 미준수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른 내용 변경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개정하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6조(권리와 의무) 및 제53조(규정 제·개정)에 따르면 협회는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52조⁶⁾ 및 제53조⁷⁾, 「규약」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 6) 본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52조(규약변경) ① 도종목단체가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도종목단체의 승인에 앞서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종목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 본회「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53조(규약 등 제정·개정) ① 도종목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도종목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개정 한다.
③ 도종목단체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2023년 「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2021년 ~ 2022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23. 2월 동 「규약」 개정하였다.

협회 「규약」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협회는 「규약」 개정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번 「2024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이사회 및 총회)에 따르면 당시 협회의 「규약」 개정시 이사회와 총회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확인되나,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에 그 심의절차가 불가한 사항이었다 하더라도 협회는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 후 그 심의를 거치는 것이 「규약」개정에 있어 다소 늦어지는 사유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의 하자를 방지하는데 있어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2023년 개정된 「규약」변경사항의 경우 절차에 대한 하자가 있음이 인정된다.

[조치사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조속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협회 「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시어 규약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조치결과를 절차 진행에 관련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종목운동을 도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도민 체력을 향상케 하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약 제4조의 각종사업을 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써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와 그 구성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37조 부터 제39조의2 조항을 두어 각종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약에 명시하고 있는데, 「규약」 제37조 제6항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위 기관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여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에 비추어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로 「규약」 제38조 및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38조,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제정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규약」 제37조부터 제39조의 2의 조항을 두어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규약」을 포함한 각종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그 운영 및 위원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각종 위원회 미구성

협회의 경우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약」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사업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를 통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규약」 제38조를 통해 별도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정한 기능에 비추어 협회 운영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매년(수감범위 ‘21~’23년도)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만 이사회,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제 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각종 위원회 규정의 미제정

「규약」 제39조 제3항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9조 제3항⁸⁾에서도 도종목단체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위원회 설치시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8)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도종목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이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규약」 제38조 제4항에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본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 제4항⁹⁾ 또한 동일내용을 규정하여 종목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 등을 준용하시어 각종 위원회 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경우 협회의 각종 규정 관리 및 징계, 포상 등에 관련된 필수적인 위원회로 판단되므로, 조속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종목단체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일련번호 : 5]

경기도체육회

주의조치

[제 목]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4조(일반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¹⁰⁾, 제32조(세금계산서 등)¹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¹²⁾ 등에 의거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10)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⑧ “생략”

12)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제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 문제가 확인 되었다.

가. 계약처리 부적정

협회는 보조사업 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집행 할 경우 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나 2022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 수행 시 220만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계약서를 미작성한 사항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행을 할 때에는 지출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자료가 객관적으로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추후 증빙자료를 추가하지도 않고 회계처리를 마무리하였다.

나. 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미운영 등 관리 소홀

협회는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실시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완료하여야 하나 보조 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하였다.

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협회는 보조사업자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교부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깨끗한 보조금 집행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용품을 구매하면서 [표2]와 같이 적립금을 적립하고 영수를 증빙하였다.

[표2] 국도비 보조금 적립금 적립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1 ****	식비	*,***	****	적립금(이**)

라. 집행 증빙서류 부실

협회는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지출하여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나 [표3]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집행하였거나 추후 증빙서류를 보충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표3] 보조금 증빙서류 부실 현황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원)	업체명	지적사항
1	2021 ****	용품	*,***,000	****	견적서, 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2		용품	*,***,000	****	견적서, 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3	2022 ****	숙박	*,***,000	****	숙박명단 및 세부내역 등
4	2022 ****	구급차	***,000	****	견적서, 타견적서, 거래내역서 등
5	2023 제11회 ****	임차료	***,000	****	타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검수 등
6	2023 제52회 ****	용품비	*,***,000	****	사업자등록증, 검수사진 이체내역 등
7	2023 ****	교통비	*,***,000	****	계약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
8		용품비	*,***,000	****	계약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

[조치사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향후 회계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보조금 집행 등 회계처리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여 조치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전자문서 및 기록물 관리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는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제2호에 따라 모든 기록물을 전자적 관리를 통해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문서를 PC로 행정, 회계 문서 전부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의 서류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고 기관과 공문서를 주고 받을때는 ‘문서24’¹³⁾를 활용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능을 대신하여 사용하고 있다. 감사결과 협회의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문서24’의 경우 일정기간 도래시 첨부서류가 자동 소멸되어 기록물 보존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협회 담당자 PC에 보존하고 있으나 기능 고장 등으로 보존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13) 행정·공공기관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는 민·관간 양방향 전자문서유통 서비스 (행정안전부 제공)

[조 치 사 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과도한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 전자
문서시스템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기타규정 제정 필요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에 따르면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사무국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맹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연맹은 기본규정(규약)만 제·개정된 상태로 세부 규정이 없어 인사 및 복무, 회계처리, 회장 출연금 관리 등 체계적으로 운영을 위해 기타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조 치 사 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규약」, 본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기타규정」등을 준용하여 사무관리 규정, 회계 규정 등 종목 특성 및 여건에 맞춰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된 기타규정을 본회 공정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경기도체육회

개선조치

[제 목] 경영공시 이행 부실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협회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협회 「규약」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제53조(규약 등 제·개정) 제56조(경영공시)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협회는 결산서, 규약,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무실 내 규약,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결산(안) 등을 누구나 방문시 볼 수 있도록 공시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조치사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약」에서 정한 공시항목 및 회장이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경기도체육회

권고조치

[제 목]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소 속 기 관]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내 용]

1. 업무개요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는 는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 및 회계관련 조항을 두어 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항은 회계관계 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¹⁴⁾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부여와 그 위반하는 회계 관계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계규정」 제11조¹⁵⁾ 또한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고

14)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3.~4. “생략”

15) 체육회 「회계규정」제11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직원 등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규정하여 「지방회계법」 제50조 제1항과 동일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협회는 현재 회계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에게 대한 구분 및 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며, 또한 회계재정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치사항] 경기도소프트테니스협회 회장은

체육회 「회계규정」을 준용하는 등 협회 운영과 관련한 회계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회계담당의 범위를 구분·지정하시고,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고합니다.